

# 헌법교육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일시 : 대한민국 99년 (서기 2017년) 6월 20일 (화)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김병욱 의원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헌법교육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일시 : 대한민국 99년 (서기 2017년) 6월 20일 (화)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김병욱 의원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 표지 사진 출처

- 윗 사진 :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 2016년 11월 12일 (사진 제공: 옥토)

<https://sudapeople.wordpress.com/2016/11/18/%EC%97%AD%EC%82%AC%EC%A0%81%EC%9D%B8-%EC%B4%9B%EB%B3%88%EC%A7%91%ED%9A%8C%EC%97%90-%ED%9E%98%EC%9D%B4-%EC%8B%A4%EC%96%B4%EC%A4%80-%EB%B2%95%EC%9B%90%EC%9D%98-%EA%B2%B0%EC%A0%95-%EB%B0%95%EA%B7%BC/>

- 가운데 사진 : 김용택,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 만들기 도전하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017-02-07 06:53. <http://chamstory.tistory.com/2642>)

- 아래 사진 : 탄핵결정문. 이정미 재판관. 사진은 헌법재판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나현 기자, 「 박근혜 탄핵 전문, 이정미 재판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입력 : 2017.03.10. 13:35)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31013208010167>

## 정책 토론회 진행

13:30 접수

14:00 개회 선언 및 진행      김 용 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14:05 인사말                              김 병 옥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14:15 동영상 ‘아하! 헌법마당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헌법읽기와 헌법교육 활동  
: 2016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김 태 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14:25 기조발제      김 승 환      전라북도교육감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15:00 주제발제1.      이 주 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15:30 주제발제2.      홍 윤 기      동국대학교 교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 방안  
: 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16:00-16:15 휴식

16:15-16:55 토론

김재용 변호사 (법률사무실 가람. ‘인천 행동하는 양심’ 공동대표)

박혜영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헌법교육의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헌법학)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헌법학)

16:55-18:00 종합토론





## 차 례

- I. 개회 선언      김 용 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 II. 인사말        김 병 옥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 III. 동영상        김 태 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아하! 헌법마당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헌법읽기와 헌법교육 활동  
: 2016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 IV. 기조발제      김 승 환      전라북도교육감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 V. 주제발제1.    이 주 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 VI. 주제발제2.    홍 윤 기      동국대학교 교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 방안  
: 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 VII. 토론
1. 김재용 변호사    법률사무실 가람. ‘인천 행동하는 양심’ 공동대표
  2. 박혜영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헌법교육의 제도 정비 방안 연구』
  3.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헌법학
  4.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헌법학



## 기조발제

#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김 승 환 전라북도교육감

헌법이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각 주체들에게 그 임무를 배분하고, 국민 또는 인간의 기본권 또는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이다. 즉, 헌법은 국가권력의 구성, 조직 및 작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 헌법의 구조에서 그 정점에 서 있는 조항은 제10조이다. 두 개의 문장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 구성 원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라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헌법은 제10조 제2문을 통해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그 확인과 보장을 국가권력의 기본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한 최고 규범적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법률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헌법의 규범적 요청이다.

헌법의 규범적 요청과 헌법현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는 존재하더라도 그 간격이 감내할 만한 정도의 것일 때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국가권력 행사의 담당자들은 국민에게서 그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이고 때로는 법원의 재판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이 기본권 침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원의 재판권이나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는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유린하는 행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은 헌법국가, 법치국가의 단계에서 시행령국가(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버리는 국가)의 단계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권력행사의 담당자가 가진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 권력남용의 속성 때문에, 헌법을 가장 표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마저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유린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헌법이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국정 농단 사건이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 의문은 오래 전에 학자들 사이에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다.

“Wer soll der Hüter der Verfassung sein?”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 라는 논란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48조 제2항 제1문은 “공화국대통령은 독일 제국 내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동요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Der Reichspräsident kann wenn im Deutschen Reiche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erheblich gestört oder gefährdet wird, die zur Wiederherstell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nötigen Maßnahmen treffen, erforderlichenfalls mit Hilfe der bewaffneten Macht einschreiten.)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바로 국가긴급권 조항인데,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유명한 칼 슈미트(Carl Schmitt)와 한스 켈젠(Hans Kelsen)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칼 슈미트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국가긴급권을 보유하는, 즉 독립적 권력으로서의 공화국 대통령을 헌법의 수호자로 보았고, 한스 켈젠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사법의 영역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답을 우리는 많은 희생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최근에 알게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감의 표출에는 거침이 없었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은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달라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끝없이 표출했다. 즉, 국민의 헌법예의 의지(Wille zur Verfassung)가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개념이 형식적·이

념적 개념에서 실질적·실천적 개념으로 전화(轉化)되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지식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기초적인 헌법 지식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하고 주장할 때 비로소 헌법의 규범력(normative Kraft der Verfassung)이 강화되는 것이다.

헌법에 대한 국민 각자의 최소한의 이해는 국민에게 헌법의 본질적 구성부분인 기본권 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주게 된다. 내 자신의 기본권 영역, 그 기본권 영역의 침해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역지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내 자신의 기본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그것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곧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올곧고 바른 힘인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깨닫게 하는 통로는 바로 학교교육이다. 학교교육은 헌법교육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과 헌법에 대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학교교육이 헌법교육을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헌법 이해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헌법 학습은 교사양성과정인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헌법강의가 있을 뿐이다.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교가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에 대한 헌법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직무연수과정에 헌법강좌를 두는 것이다. 물론 교원의 직무연수 과정에서의 헌법교육은 교원양성과정에 헌법 커리큘럼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적 뿌리 기능을 해 온 공교육 영역에서 헌법교육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사회 수업 시간에 스치듯이 헌법에 대해 잠깐 배우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똑똑한 바보’로 만들어온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공교육의 뿌리를 헌법교육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헌법 내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헌법적 존재 인식을 통해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를 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헌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암기

하고 그것을 시험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헌법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헌법과 자신의 삶의 밀접한 연관성을 깨닫게 하고, 국가권력의 담당자에 의해서 헌법정신이 훼손되거나 헌법의 가치가 유린되지 않도록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학교교육에서의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위헌적 권력행사에 대항하여 헌법이 마련해놓은 권력통제 장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탄핵제도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행사의 수권을 국민의 손으로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아래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 선고를 내리기 하루 전날인 2017년 3월 19일 전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단위학교로 보낸 공문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라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탄핵심판 결정 선고 TV 생방송 중계 시청 안내

1. 관련
- 가. 계기교육 지침 알림(학교교육과-5492, 2016.03.31.)
  -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1.)
2.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바,
3. 전라북도교육청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탄핵심판 결정 선고 TV 생방송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내용: **탄핵심판 결정 선고 TV 생방송 시청 권고**
  - 나. 일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생방송**
  - 다. 방법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도 가능
    - 시청 후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의견 토론 가능. 끝.

대통령 탄핵 관련 생방송중계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공문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헌법 의식을 일깨우는 귀중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통령 선거에 관한 토론이나 모의투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 탄핵결정 선고 생방송중계를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했던 한 장의 공문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문 한 장이라는 작은 노력이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물꼬를 트고 그것이 또 다른 헌법학습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헌법이 바로 선 나라,  
헌법규범이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의 기준이 되는 나라,  
힘 있고 배운 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바로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 주제발표1.

#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sup>1)</sup>

이 주 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누가 언제 왜 세웠는지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주관자 국민이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을 교육하는 책임을 진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당연히 헌법교육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을 가르쳐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표현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짓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과 정신을 갖고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규범이다. 이 규범이 갖고 있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체를 읽어본 국민이 8%도 안 되는 현실이고, 초중등학교와 대학 때 헌법을 배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 정도가 배운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단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다<sup>2)</sup>. 실제 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2016년 3월 1일부터 20여회 진행한 헌법교실에 참여한 수강자들에게 헌법을 읽어 보았느냐는 질문에서는 90% 정도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했고, 헌법읽기 운동을 알기 전까지는 헌법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형편이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태어난 생일도 제대로 모르는 형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87헌법인 현행 제10호 헌법 전문에서도 분명하게 밝혀놓은 대한민국 법통이 어디에 있고, 그 법통에 따라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학교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교육청 2016교육공동체 협력활동 <학교현장에서의 헌법교육 간담회>』(2016.12.26.,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자료집에 실린 글은 바탕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2) 이 글 말미에 첨부한 이주영(2017), 「헌법교육에 대한 설문」. 이 설문 응답은 2017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구글 메일을 이용해서 작성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활동하던 카톡방 10여 곳에 올려서 받았다. 2차 전달을 통해서 235명이 참여하였다. 이곳은 평소 연구자가 활동하면서 헌법읽기운동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였던 사이버공간이고, 이 곳에서 설문에 참여하고 이 설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차 전달 과정에서 참여한 응답자이므로 지난 1년 동안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읽기운동에 참여한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헌법 전체를 읽었다는 비율이 8% 정도로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현행 학교 헌법교육의 현황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교과교육에서 지도하고 있는 헌법 관련 내용 요소<sup>3)</sup>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에 나타난 헌법 관련 내용 요소는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라는 단원에서 헌법 및 다른 법 일반, 헌법상의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곽한영, 2013; 허종렬 외, 2013).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곽한영, 2013).

첫째, 교육과정 내용의 정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제목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단원 설명 첫머리의 내용이 성취기준 진술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둘째, 내용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다시 ‘기본권’을 언급하여 내용 중복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는 문구가 두 성취기준에서 중복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나의 성취기준에 대응하는 교과서 분량이 3~4페이지에 달해 교육과정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장 교사들은 이 부분을 수업할 때 학습 분량도 많고 내용 자체도 초등학생의 수준에 비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나.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사회’ 과목 2개 단원에서 헌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이 기본권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헌법과 국가기관’이 통치구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인권과 헌법의 결합이 지닌 내용 구성상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곽한영, 2013). 9단원의 구조는 인권과 헌법을 동일선상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헌법을 다룰 경우 통치구조론과 같이 인권보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 요소를 자연스럽게 전개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중학교 역시 학습 분량이 너무 많은 편이다(곽한영, 2013). 10단원의 경우 각각 하나의 중단원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조직과 기능 및 권한을 모두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차원에서 통치구조론을 다루는 것 자체는 전에 없이 내용 분량이 많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위 학습요소가 조직, 기능, 지위, 권한 등을 모두 다루도록 되어 있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분량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수는 축소된

3)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지면 제약으로 생략하였다. 헌법교육 내용 요소를 담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re.kr>’에 접속하여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10개 대 단원이 14개 대단원으로 확장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내용 요소를 수업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궁극적인 인권 가치와 중요성을 다루지 않고 인권 보장의 범위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이종수 외, 2013). 인권으로 단원이 도입되었다가 곧 기본권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인권의식과 인권보장의 실천보다는 헌법상 나타난 기본권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을 상호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소 소홀해 지고 있다.

넷째, 권력분립에 대한 설명과 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이 분리되어 있어 통치기구 간 견제와 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이종수 외, 2013). 이로 인해 국가기관의 역할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다소 간과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헌법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이종수 외, 2013). 예를 들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태도 등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데 머물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에 관해 설명하고 적용해 보는 학습 경험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 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회’는 통합 교과 성격을 갖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라는 중단원에서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3개의 성취기준으로 기본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통치구조나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토론수업을 전제로 하는 통합사회 과목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내용이 교수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이 단원은 전체적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현장에서 통합사회를 통한 헌법교육의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교과서와 별도로 ‘법과 정치’라는 선택 과목이 있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 헌법 관련 내용은 3단원 ‘헌법의 기본원리’에서 다루고 있다. 이전 ‘정치’ 과목과 달리 ‘법과 정치’에서는 대단원명에서부터 ‘헌법’ 내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내용 요소도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에서도 헌법교육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된다(곽한영, 2013).

첫째, 법 영역과 정치 영역의 부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두 영역 간 독립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내용은 정치와 법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내용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이러한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학습량을 크게 늘어난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른 선택 과목들이 평균적으로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 법과 정치는 6개 대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어 학습량 부담이 가장 큰 과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선택 비율이 극도로 낮아졌으며, 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헌법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sup>4)</sup>

4) 송성만·이대상·정필운·김현철(2015), 「초·중고 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계열성 분석 및 제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제3호(2015.12.30), 87-89쪽. \*문장은 발표자가 일부 교열하였음.

### 3. 현행 학교 헌법교육의 문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교육과정을 보면 초중고 사회과 교과교육에서 모두 헌법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1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보면 ‘1.우리 생활과 민주 정치, 2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3 국민의 권리와 의미, 4 행복한 삶과 인권’이라는 소단원으로 나뉘어서 약 한 달 동안 가르친다. 중학교도 2015년 교육부에서 헌법재판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유학기제 동안에 헌법교육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사탐 선택과목인 ‘법과 정치’교과서가 있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다수 국민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헌법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헌법을 모른다고 하였다. 헌법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응답이 29%,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12%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기억하는 응답자 중 25%가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 중요한 까닭은

첫째, 우리나라가 헌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국가 운영의 기본 사상과 정신으로 삼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아왔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를 용납해 왔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런 현실에 갇혀 있었다. 헌법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헌법 정신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고, 그런 사회에서 교사들이 헌법을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고, 학생들 또한 제대로 배울 리가 없다. 고등학교 사탐 ‘법과 정치’를 수능에서 선택하는 비율이 불과 9%라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헌법 교육도 지식 암기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항을 읽고, 시험 보기 위해 외우는 것이다. 헌법교육에서 조항만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시험을 봐야 한다는, 곧 외워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지면 의미 없는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헌법 조항을 외우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헌법 지식은 필요가 없는 지식이 되는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을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치로 배웠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었다면 오늘날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와 정신을 담은 그릇이라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형사법이나 민사법처럼 벌칙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다른 법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기본법이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자고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령과 조례가 헌법에 맞아야 하고, 시행령도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사회 현실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헌법을 단순 조항이 아니라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헌법 역사와 헌법에 담아 놓은 사상과 정신을 가르치면서 각 조항을 그에 맞도록 해석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구현시켜야 하는지 토론을 하면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시켜야 삶을 가꾸는 헌법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헌법>법>시행령’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고 ‘법>헌법=법=시행령’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헌법 연구자들이나 법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헌법교육을 법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엿볼 수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행령>법>헌법’을 강요했다. 헌법과 법교육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야 한다. 모든 법은 헌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헌법을 지킬 권리와 헌법은 지킬 책임을 분명하게 나뉘어서 가르쳐야 한다. 헌법을 지킬 책무, 곧 준수 의무는 헌법 제69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 명을 따라야 하는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있다. 또 103조에 의거하여 법관들이 지켜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헌법을 지킬 책임이 아니라 헌법을 지킬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곧 국

민은 헌법을 지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고유한 기본권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학교 헌법교육에서는 국민이 헌법을 지킬 권리가 아니라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는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을 헌법을 만들고, 바꾸고, 지킬 권리가 있는 주권자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법을 지켜야 국가 안전이 보장되고 국민 전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공동선이 국민 개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수혜자 관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활 속에서 당장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해 법(형사법, 민사법...)은 조금만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경험 때문에 헌법은 별 의미가 없는 장롱 헌법, 죽은 헌법으로 인식되게 한다.

#### 4. 학교 헌법교육 정상화 방향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헌법교육을 반성하고,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명실상부한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최소한 현재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 관련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제대로 시킨다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탐구와 체험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곧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울삼양초등학교 배성호 교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온 사회탐구와 연계한 체험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교육은 사회과라는 한 교과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전 교과와 생활교육에까지 연관되어 있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가르쳐야 한다.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은 담당 교사들이 각 교과와 생활교육에 맞게 구성해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헌법 조항을 학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헌법 역사와 헌법이 담고 있는 사상과 정신, 현실 생활 속에서 헌법 가치 실현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가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각 학교 급별과 학년에 맞게 재구성해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연령과 지식수준에 맞게 구조화시키고 문화예술과 접목해서 각 교과교육에 편재해야 한다. 헌법 전문과 조항을 놀이, 시와 소설, 동시와 동화, 그림책,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로 담아내고, 학교 현장에서 각 교과교육과 연계해서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운영도 헌법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은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에 맞게 활용할 때 그 가치가 확보되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국민 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상식이 되어야 하고, 대한국민 생활을 규정하는 기본 틀이 되어야 그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운영규정과 학칙이 헌법 정신에 맞게 되어야 하고, 그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학급운영도 헌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 5. 나오는 글

이렇듯 헌법과 법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법교육관 때문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고, ‘법대로 하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관용구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법치국가였던

조선이 후기 사회로 오면서 법이 무너지고, 침략자 일본제국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국토를 침탈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독재 정부와 경제 양극화 과정에서 특권을 가진 집단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악법과 시행령을 마구 만들어서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한 민주정부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벗어던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 헌법과 법에 관한 교육은 국민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강요한다.

이제는 헌법과 법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조항 외우기에서 조항에 담긴 뜻을 이야기 나누고, 헌법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서 공동체적 해석으로 나가면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해석과 합의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헌법 읽기와 헌법 수다 떨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기본은 헌법 교육은 법 교육 이전에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온 국민 헌법읽기 운동을 위해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손바닥 헌법책』에 굳이 대한민국 제1호 헌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1호’로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前門)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 총회 결의, 1948.12.10.)을 넣은 까닭은 헌법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뜻이다.

나아가 헌법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연계해서 사회탐구와 체험학습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헌법교육과 관련한 시민단체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정도이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는 좀 더 있는 편이다. 이러한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학교 교육에서 헌법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개발하고 있는 헌법 핵심용어카드, 이두형 회원이 집필한 게임형 동화인 『헌법특공대』는 초등학교에서, 조유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정책위원이 집필한 『헌법사용설명서』를 비롯한 헌법해설서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헌법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시민대학을 교직원 연수와 연계시켜서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온 국민 헌법읽기 운동을 크게 일으켜야 한다. 최소한 초중고 각 학년 연령기에, 어른들은 5년에 한 번씩은 헌법 전문을 한 번씩 읽고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때도 하고, 군대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노인정에서도 하자. 평생 꾸준히 헌법을 읽고, 헌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문화예술로 헌법을 즐기게 하고, 국민이 헌법 주권자라는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헌법교육이 가능하도록 헌법교육진흥법을 구상해 보자.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와 사회에서 헌법교육을 정상화시킬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정신에 맞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99년 (서기2017년 / 단기4350년) 6월 10일 이주영

## 《참고 문헌》

김기승(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 백문식(2013).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 정인출판사.
- 성낙인((2012).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 이두형(2016). 헌법특공대, 현북스.
- 이오덕(2012). 우리말로 살려놓은 민주주의 헌법, 고인돌.
- 정종섭(2002).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 조유진(2012). 헌법 사용 설명서. 이학사
- Tyler, R. W.(이종승 역)(1987). 교육과정과 수업의 원리, 교육과학사.
- 김현철(2009). 「헌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4(1), pp. 89-101.
- 김현철 외(2013). 「고등학교 헌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곽한영(2009).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 요소」, 법교육연구, 4(1), pp. 1-28.
- \_\_\_\_\_(2013). 「초중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14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송성민·이대성·정필운·김현철(2015) 「초·중·고 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계열성 분석 및 제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제3호(2015.12.30.).
- 이국운(2004).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사회, 26(0), pp. 9-43.
- 이대성(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상 헌법 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법교육연구, 6(2), pp. 55-72.
- 이종수 외(2013).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한 중학교 워크북 개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 보고서.
- 이주영(2016). 「학교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교육청 2016교육공동체 협력활동 <학교현장에서  
서의 헌법교육 간담회> (2016.12.26.,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자료집 41쪽-51쪽.
- 정상우(2013).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2013 한국법과인권교육학 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 허종렬 외(2013).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한 초등 교과서 개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 보고서.

<설문안>

**헌법교육에 대한 설문**

학교에서 헌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헌법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어떤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헌법교육 발전을 위하여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가자 개인정보는 통계 자료로만 사용합니다.

2017년 6월 1일

연구자 이주영(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1. 대한민국 헌법이 130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 )
  - 1) 잘 알고 있었다.
  - 2) 대강 알고 있었다.
  - 3) 몰랐다.
  - 4) 잘 몰랐다
  - 5) 전혀 몰랐다.
  
2. 대한민국헌법 130조를 전부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
  - 1) 여러 번 읽었다.
  - 2) 한번 읽었다.
  - 3) 일부 조항만 읽었다.
  - 4) 전혀 읽지 않았다.
  - 5)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3. 학교에서 헌법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
  - 1) 초등학교 때 배웠다.
  - 2) 중등학교 때 배웠다.
  - 3) 고등학교 때 배웠다.
  - 4) 초·중·고등학교 때마다 배웠다.
  - 5) 배운 기억이 안 난다.
  
4. 학교에서 헌법을 배웠다면 어떤 것이 기억나는지요?(1,2,3,4항목 답변자만 답변)( )
  - 1) 헌법 전문이 기억난다.
  - 2) 일부 헌법 조항이 기억난다.
  - 3) 국민의 권리가 기억난다.

- 4) 국민의 의무가 기억난다.
- 5) 배운 것 같기는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

5.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

- 1)유치원부터 해야 한다.
- 2)초등학교부터 해야 한다.
- 3)중학교부터 해야 한다.
- 4)고등학교부터 해야 한다.
- 5)굳이 학교에서 할 필요는 없다.

6. 최근 헌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통해서 알았나요?(복수 선택 가능)( )

- 1) <손바닥 헌법책>에 대한 기사나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알았다.
- 2)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알았다.
- 3) 촛불집회 때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알았다.
- 4) 문자, 카톡, 페이스, 밴드같은 매체를 보고 알았다.
- 5)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알았다.

7.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적극 반대한다.(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 2) 조금 반대한다.(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
- 3) 조금 찬성한다.(어렵겠지만 추진하는 건 찬성한다.)
- 4) 찬성한다.(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 5) 적극 찬성한다.(국가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8. 귀하는 만 몇 살이십니까?( )

- 1) -10세 2)11세-20세 3)21세-30세 4)31세-40세 5)41세-50세 6)51세-60세 7)61세-70세
- 8)71세-80세 9)8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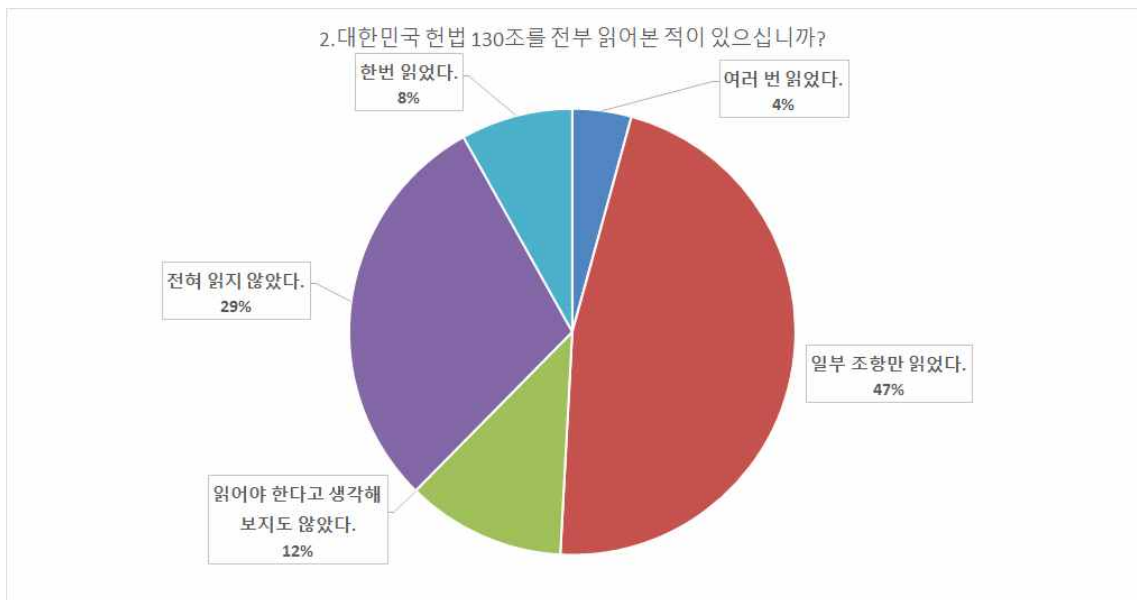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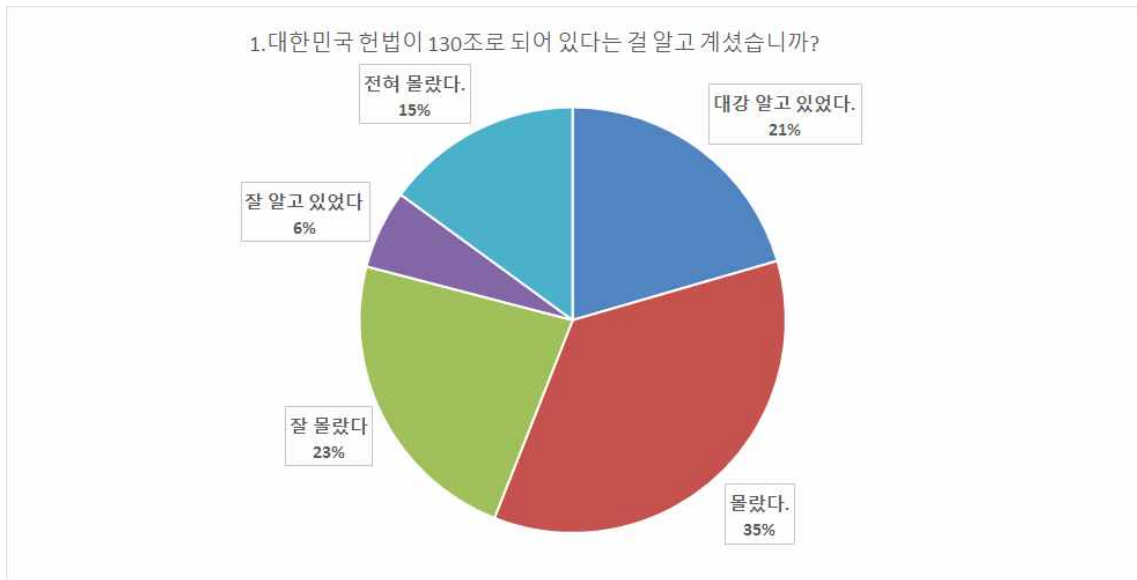
9.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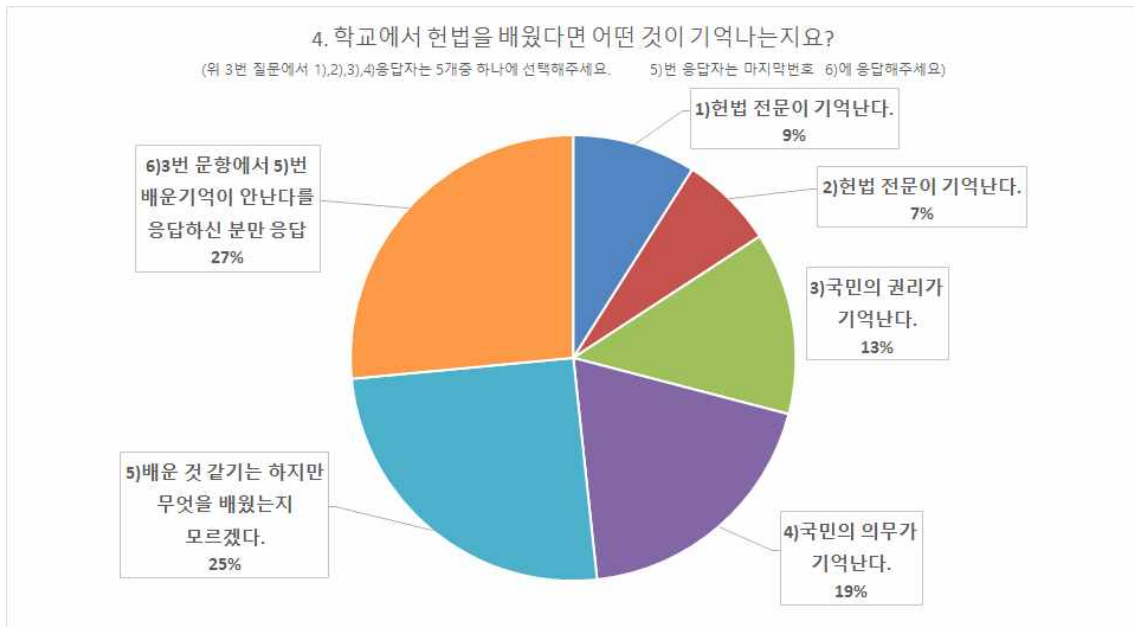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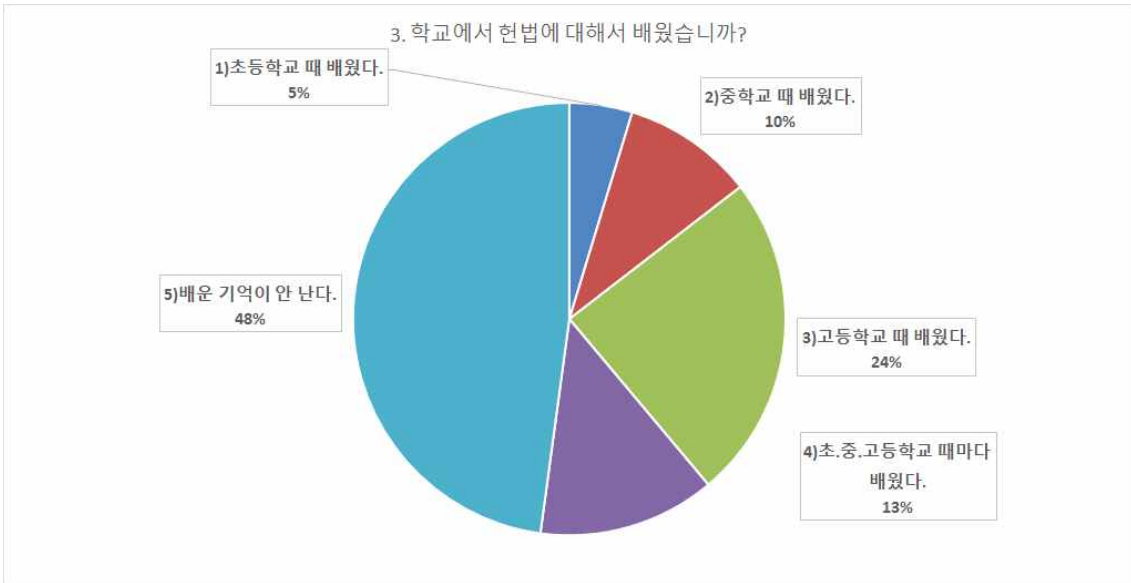
- 1) 무학 2) 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 7) 가정학교, 대안학교, 외국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학제에서 선택할 수 없다.

고맙습니다.여러분 설문 결과를 정리해서 6월 20일 국회 헌법교육포럼 때 발표하고, 추후 헌법읽기운동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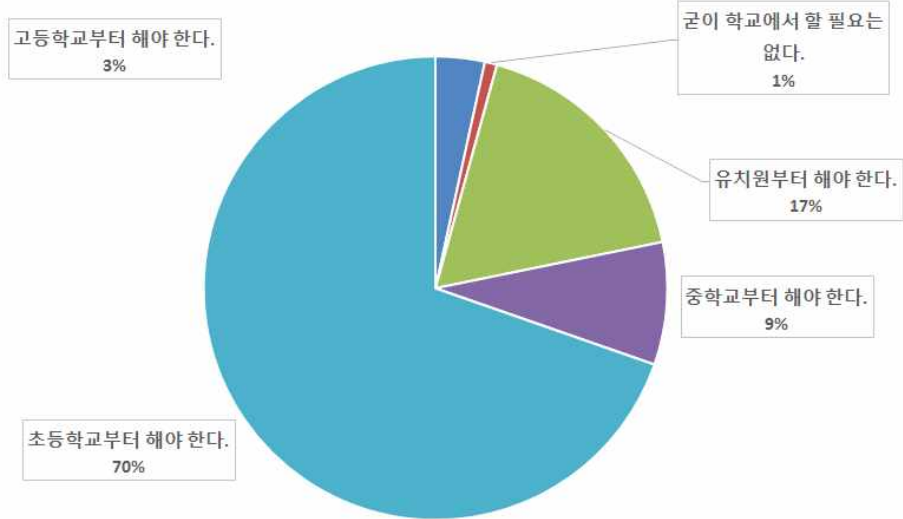


<설문응답\_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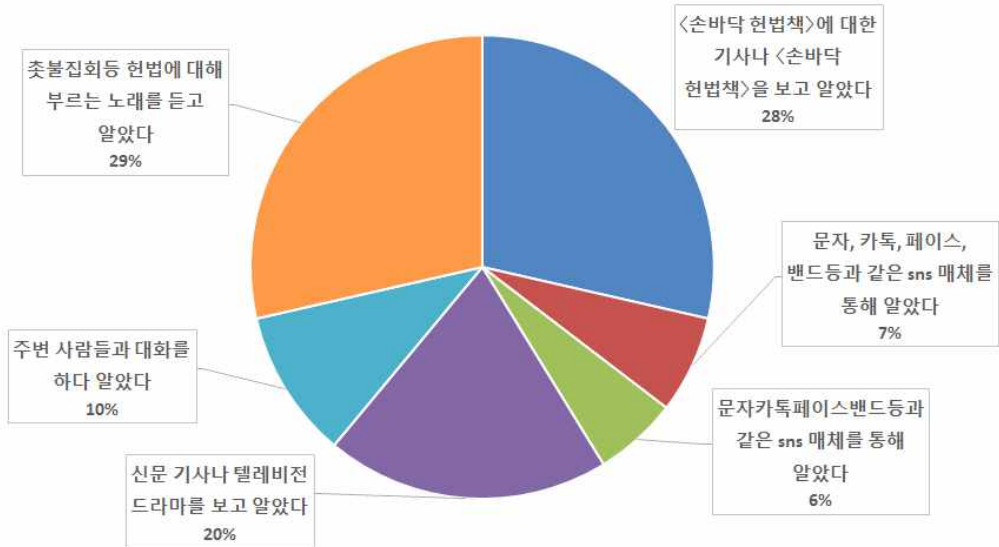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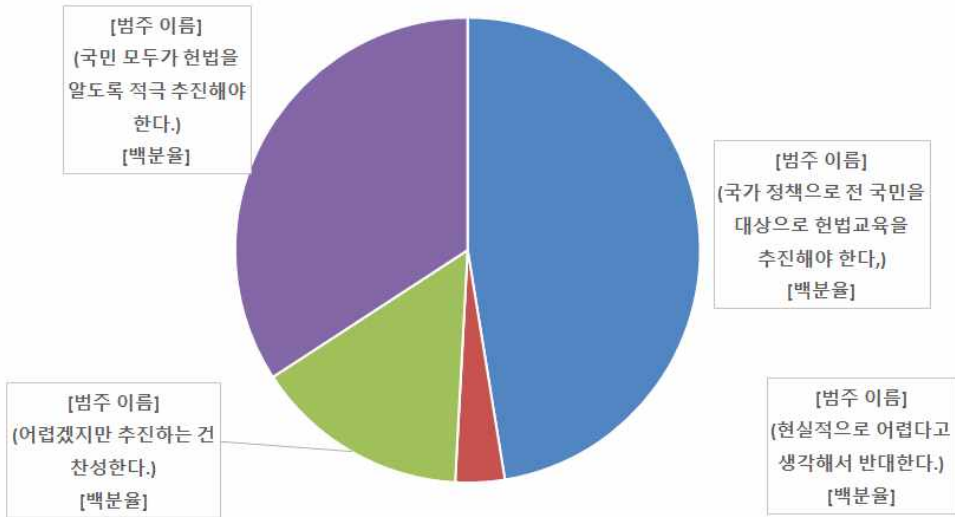
5.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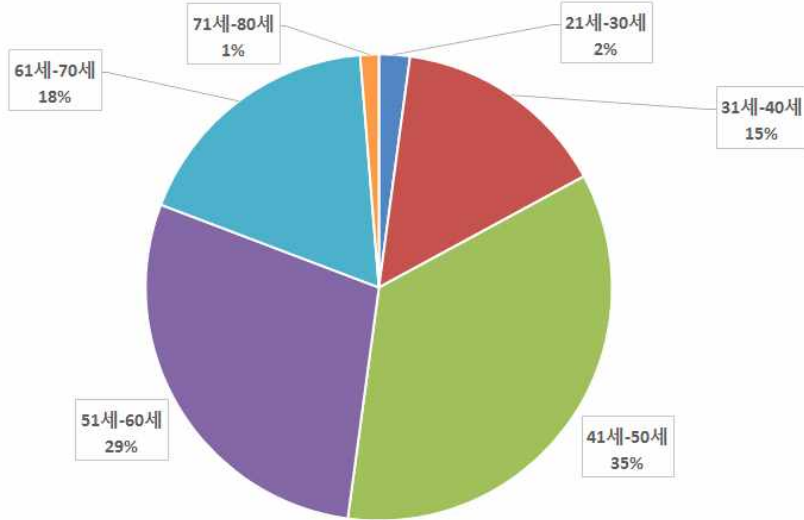
6. 최근 헌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통해서 알았나요?(복수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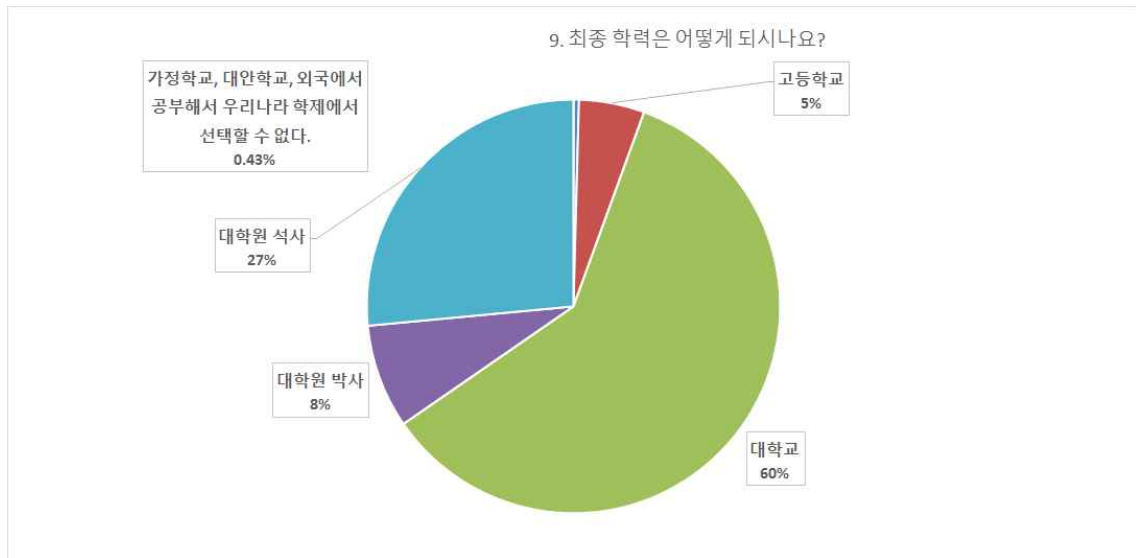


7. 모든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귀하는 몇살입니까?





손바닥헌법책덕분에헌법을가까이하는게기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실이 법이 서민들에게도 평등할까요 가진자들에게만 이로운법
헌법을 알고 읽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헌법!!
헌법1조1항 -2표-
공직자 및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헌법교육을위해애쓰시는분들께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 2표-
헌법교육이 울자식,그 아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잘 발전되길바랍니다^^
손바닥 헌법책을 초등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면
헌법은 중요한데 잘 모르고 살았네요
현실과 연결된 헌법 교육이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알게 돼서 감사 합니다
헌법을 새로 고칠 때, 뜻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보도록 반드시 배달말을 썼으면 좋겠다.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은 꼭 지켜져야 할만큼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헌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함께 읽고 숙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모두가 주인인 나라
앞장서주셔서고맙습니다.
지금에라도 헌법을 가까이 하게되어 다행입니다
최근에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된 헌법이 있을 시 전국민에게 알리고 일정시기에 찬반의견을 묻기 바란다.
시민들이 헌법을 좀 더 쉽게 만나도록 노력해야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상세히 알아야하겠다,
헌법교육 실시
학창시절배운헌법은헌법의정신이빠져있었다.국가의가장중요한상위법이라고는배웠지만그것이 왜상위법인지. 그것을만든사람들은어떤나라를만들기위해그법을만든것인지를배우질못했다.세세한조항보다헌법의정신을먼저가르치고,거기에서이러이러한조항이만들어지게되었다고설명하면좋겠다.
헌법수호를 위해서 법을 알아야한다
수고하십시오.
헌법을 바로 알자
심장이 뛰듯이 헌법 읽기 운동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화이팅!!
민중이 중심이 되는 나라 만들기!!
국민주권은국민에게있다.헌법은헌법일뿐 국민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주권의행사를 할수있도록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헌법은 아름다운 약속임을 모두가 알도록.
조금씩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것 같아 희망적입니다
헌법교육꼭필요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헌법교육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설문낸사람도 잘기억을 못하겠죠 그이유가 뭡까요 ?
초등학교 때 헌법시간이 1주일에 1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최소한 헌법130조를 한번은 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자연계 관계없이 필수로 알게해야 -4표-
헌법은 알아야하는것인데 너무 무심했습니다. 우리모두가..
헌법정신이 모든 문화에 배어들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필요함
헌법교육에 저도 동참 하고 싶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함께 하고과요
법 과목이 새로 생겨서 어릴적부터 법을 가까이 해야합니다.

<설문응답\_통계기초자료>